#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5-007-021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우리카드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5. 3. 26.

# 주 문

-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을 상시적·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업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화면에 출력·표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13,45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하도록 명한다.

-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에 전체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2일 이상 5일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며, 글자 크기·모양·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 4. 피심인에 대한 고발 및 징계권고를 유예한다.

# 이 유

####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1)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대표자(이하 '가맹점주')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이하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종업원 수(명)
주식회사 우리카드				

####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전	체	매	출	액				
당	기	순	0	익				

# Ⅱ.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4월 26일 피심인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31됨에 따라 사실관계 및 보호법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sup>1) &</sup>lt;sup>①</sup>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sup>②</sup>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sup>③</sup>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sup>2)</sup>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적용

<sup>3) &</sup>quot;우리카드, 가맹점대표자 개인정보 7만5천건 유출...대고객 사과"(연합뉴스 외 다수, 2024.4.26.)

#### 2. 개인정보 수집·처리 현황

피심인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가맹점 가입 관련 서류 등을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발급한 정보주체(이하 '카드회원')로부터 성명,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다.

피심인은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카드시스템뿐만 아니라 Data Warehouse4)(이하 'DW')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가맹점주 등 개인정보 수집현황 ('24.7.11.기준) >

구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항목	규모 (명)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관리시스템 및 카드발급심사시스템을 통해 DW 시스템 등에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상태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개인정보 침해·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경 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가맹점계약 체결·유지·관리·개선 등 목적으로 수집·처리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카드·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이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동의가 없음

<sup>4)</sup>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용이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해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에도 해당 개인정보를 피심인의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해 신용카드 신규 발급 마케팅에 활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사 카드 모집인에게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 가맹점관리시스템 및 카드발급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 관련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는 가맹점주 대상 사업자 카드 마케팅 등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피심인이 수집한 가맹점 리스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카드 모집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자등록번호 등 피심인 외부로부터 수집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관리시스템의 가맹점 사전 등록 관리 화면()에 입력하고 가맹점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

< 가맹점관리시스템의 가맹점 사전 등록 관리 화면 >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는 가맹점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 번호를 카드발급시스템의 모집인심사요청사전통합거래 화면()에 입력 하고, 해당 가맹점주가 피심인이 발급·관리하는 신용카드를 보유한 카드회원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였다.

 < 카드발급시스템의 모집인심사요청사전통합거래 화면 >

이후,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명, 유선전화번호, 주소' 등 가맹점 정보가 포함된 출력물5에 카드발급시스템에서 조회한 '카드 보유 여부'를 기재하고, 카드 미보유 가맹점주의 경우에는 가맹점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한 가맹점주의 '휴대전화번호'를 추가 기재하였다.

<	가맹점주 개인정보 목록	출력물 >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는 최소 2023년 7월경부터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심인의 직원 4명과 피심인의 카드 모집인 1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 하였는데, 해당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는 타사 카드 모집인 3명도 참여하고 있었다.

< 피심인	인천영업센터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출력물	화면>

<sup>5)</sup> 피심인 내·외부로부터 수집한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출력물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가 해당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공유한 이미지 중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가명점명, 주소,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출력물을 촬영한 이미지도 있었다.

 < 가맹점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목록 출력물 >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가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업자 카드 마케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가맹점주의 수는 최소 131,862명이이고, 이 중 마케팅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주의 수는 45,709명이다.

#### 나. DW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 관련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는 직원들이 가맹점관리시스템 및 카드발급시스템을 통한 조회 업무가 과다하다고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2023년 9월부터는 DW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DB) 명령어가(SQL)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가맹점 여부, 가맹점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카드 보유 현황 등을 쉽게 조회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sup>6)</sup> 같은 날 가맹점관리시스템과 카드발급심사시스템에서 동일한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한 경우로, 이 중 최소 5,677명의 개인정보는 근무시간(08:50~18:10) 외에 조회함

<sup>7)</sup> 피심인 본사 직원이 작성하여 인천영업센터에 제공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신용카드가맹점 여부, 가맹점명, 대표자(가맹점주)명, 연락처(가맹점주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 형태, 가맹점주가 피심인이 발급·관리 중인 신용카드 보유 여부 등을 조회하는 구문

	< DW 시스템에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조회 명령어 구문(일부) >
	피심인의 직원은 DW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최소 113개의 엑셀 파일을
	성하였는데, 해당 파일에는 가맹점주 75,676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중에는 마케팅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주 45,709명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피심인의 직원은 이를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	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타사 카드 모집인 1명8)에게 메일
	로 제공하였다.
	< DW 시스템 조회·생성, 이메일 전달 방법 >

<sup>8)</sup> 피심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사 카드 모집인의 보조인이라고 설명

<	이메일로	전달된	가맹점주	개인정보	>

#### 다.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신규 발급 마케팅에 활용

피심인은 가맹점 관리 및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 등을 위해 2021년경 지역센터를 신설하였고, 2022년부터 전국 영업센터(9곳)로 전환하여 현장 영업을 강화하는 등 가맹점·신용카드 실적 증대를 위한 영업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카드 모집인에 대한 적격 심사 후, 카드 모집인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다.9)

<sup>9) 「</sup>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제14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와 제1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구별하여 준수사항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는 관할하는 지역의 가맹점·카드 실적 증대를 위해 카드 모집인을 통해 영업 활동을 수행하였고, 피심인은 영업센터의 가맹점·카드 영업을 독려하고 포상 등을 지원하는 체계이다.10)

 < 피심인의 내부 전결 규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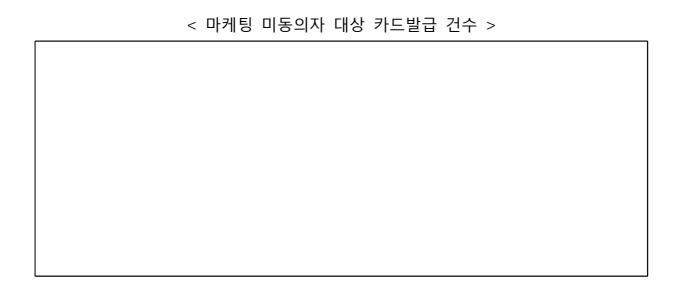
피심인은 개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때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전체]"를 이용해 "카드·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이 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전체] >

<sup>10)</sup> 인천영업센터 직원은 출석·진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조회·제공 이유를 사업자 카드 실적 증대를 위한 업무였다고 진술

그러나,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는 앞서 살펴본 가맹점관리시스템, 카드발급시스템 및 DW 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카드·금융상품 안내'등 마케팅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207,538명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조회 및 파일로 생성하여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해 신용카드 발급 마케팅에 활용하였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가맹점주 중 마케팅에 미동의한 가맹점주는 74,692명이며, 이중 피심인이 발급하는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한 사람은 994명이었다.



참고로 2024년 4월 본 사건 관련 언론보도 이후 피심인의 고객센터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접수된 민원 총 15건 중 6건<sup>11</sup>)은 마케팅에 미동의한 가맹 점주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피심인의 시스템 운영 및 안전조치

피심인은 영업센터의 현장 영업을 강화하면서, 전국 영업센터에서도 가맹점관리시스템, 카드발급심사시스템 및 DW 시스템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부여하였으나, 접근권한 과다 부여 여부, 접속 조회기록에 대한 점검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sup>11)</sup> 개인정보 유출 사실확인 및 보상 요구(4건), 스팸 문자 과다 수신 및 재발 방지 요구(2건)

#### 1) 접근권한 관리

피심인은 사고 발생 당시까지 영업센터 등에서 가맹점관리시스템, 카드발급심사 시스템 및 DW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신청하면 피심인의 정보보호부서를 통해 승인하는 절차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피심인은 가맹점 등록·관리, 신용카드 발급 심사 등 영업센터 직원의 업무 범위가 구분되어 있고, 업무상 모든 권한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영업센터 직원 15명을 포함하여 피심인의 직원 98명에게 가맹점관리시스템과 카드발급심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구분없이 모두 부여하였다.

실제 피심인의 가맹점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영업센터 직원 중에는 원래 업무상 카드발급심사시스템의 모집인심사요청사전통합거래 화면(

)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하고, 피심인이 발급·관리하는 신용카드를 보유한 카드회원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용도로 해당 권한을 부여받았다.12)

또한, 피심인은 영업센터 업무 특성상 DW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불필요함에도 영업센터 직원에게 DW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DW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고도 한 번도 사용하지않아 자동으로 회수<sup>13)</sup>되는 경우가 2021년 8월 13일부터 2024년 4월 17일 기간 중34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은 위와 같이 DW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자동으로 회수된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와 접근권한 부여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재차 해당 권한을 부여하였다.

<sup>12)</sup> 피심인은 인천영업센터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부여된 접근권한을 사고 발생 후 회수함(2024.8.6.)

<sup>13)</sup> DW 시스템 접근권한은 승인 이후 약 3개월(90일)간 유효하고, 1개월 미사용 시 권한 자동 회수 및 재승인이 필요

<	인	천영입	법센터의	DW	시스템	접근권한	신청	내역	(1개월	미시	용	자동회	수 8	3건) >

심지어 피심인은 DB 명령어 구문(SQL) 등을 작성·실행하는 방법도 모르는 등 DW 시스템을 사용할 줄 모르는 직원에게도 DW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또한 인천영업센터는 DW 시스템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 조회 및 엑셀파일 생성을 위한 단계별 매뉴얼을 제공받아<sup>14</sup>) 사용하기도 하였다.

인천영업센터가 제공받은 개인정보 조회 및 엑셀 파일 생성을 위한 매뉴얼의 단계별 실행 절차는 <sup>①</sup>임시테이블 생성  $\rightarrow$  <sup>②</sup>가맹점주 정보 조회 등 마스킹 해제 승인 요청  $\rightarrow$  <sup>③</sup>조회 결과 다운로드(엑셀 파일) 및 반출, 메일 전송  $\rightarrow$  <sup>④</sup>임시테이블 삭제로 확인된다.

<sup>14)</sup> 인천영업센터 직원은 본사 직원이 DB 명령어 구문 및 매뉴얼까지 작성하여 제공하였다고 진술

 <	개인정보	조회	및	엑셀	파일	생성	매뉴얼	일부	발췌	>	

피심인은 사고 이후인 2024년 4월 19일경 전체 영업센터에 부여된 DW 시스템 접근권한을 일괄 회수 조치하였다.

< 각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현황 >

# 2) 접속기록 점검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다른 영업센터에 비해대량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2023년 12월경에는 조회 건수가 46,346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가맹점관리시스템 및 카드발급심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있다.

<	조회기록 현황 >

피심인의 영업센터에서는 DW 시스템에서 DB 명령어 구문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이름, 연락처, 주소, 피심인이 발급한 카드 보유 여부 등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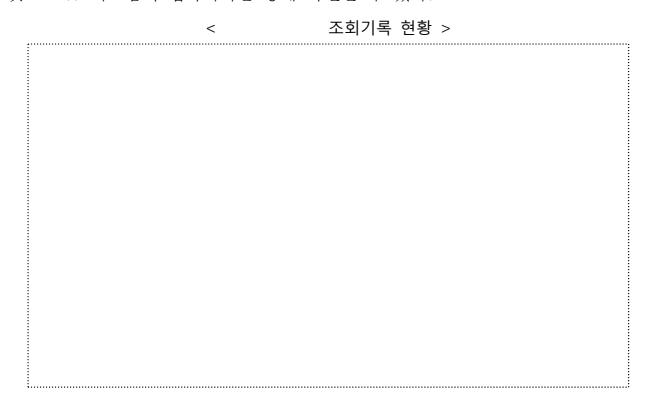
조회하고 대량으로 다운로드를 하였는데, 2023년 11월 22일경 인천영업센터에서 약 853만 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하여 마스킹을 해제한 것이 DW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인천영업센터 DW 시스템 마스킹 해제 승인 이력(일부) >

 _	,	. –	1—0	., ., .	 1(=1)	

또한, 2023년 6월 강동영업센터 약 1,700백만 건, 2023년 11월 인천영업센터 약 3천만 건, 2024년 3월 강서영업센터 약 3천만 건 등 다른 영업센터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전월보다 개인정보를 조회한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DW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이 이러한 가맹점관리시스템, 카드발급심사시스템 및 DW 시스템의 해당접속기록을 확인하여 각 영업센터 또는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조회한사유를 확인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15)

# 3) 화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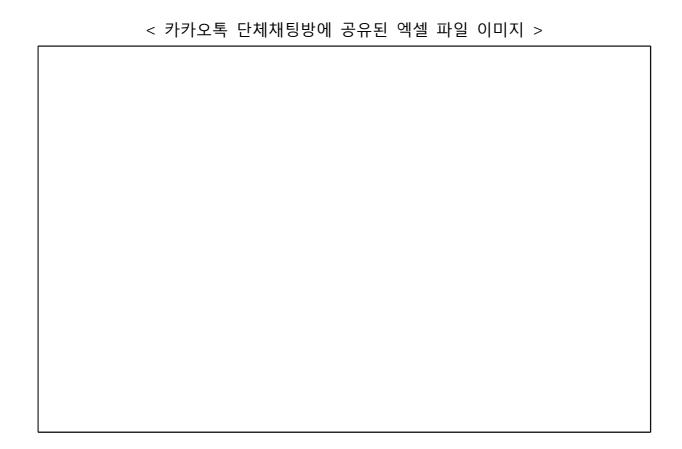
피심인은 가맹점관리시스템의 가맹점 사전 등록 관리 화면( )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가맹점주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과 함께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화면에 그대로 표출되는 형태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에, 인천영업센터는 가맹점 사전 등록 관리 화면( )에서 조회된 주민등록번호를 모집인심사요청사전통합거래 화면( )에 입력하여 가맹

<sup>15)</sup> 피심인은 다운로드 전체 건수, 엑셀 파일 과다 조회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였다고 소명하나, 사고 발생 기간의 점검 결과 자료는 제출하지 못함. 2024년 6월 이후 마스킹 해제 과다 사용자(당월 100건, 전월 대비 2배, 6개월 평균 대비 2배 등) 대상 자료만 제출

점주의 피심인이 발급한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된 엑셀 파일 이미지에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모두 그대로 표시되어 있고, 2024년 1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천영업센터 직원이출력한 인쇄물 일부에서도 사업자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가포함된 가맹점주 942명의 개인정보가 출력된 사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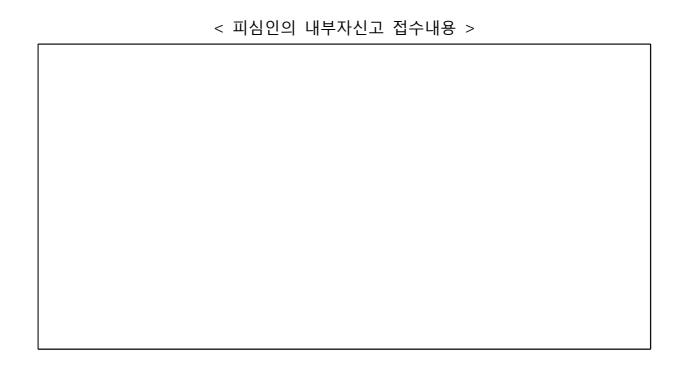


피심인은 2021년 11월 5일 가맹점관리시스템에서 화면 설계 당시에는 '개인정보마스킹 적용(Y)'으로 승인·개발되었으나,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마스킹 해제된 이유는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가맹점 사전 등록 관리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가 표시되어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사고 인지 및 대응

우리금융그룹(지주)은 2024년 4월 16일 내부자 신고 외부 채널인 '레드휘슬'을

통해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 직원이 카카오톡 사진으로 외부로부터 타사 전일자가맹체결리스트를 전달받아(하루 1,200에서 1,500개 가맹점정보) 사업자번호로대표자 카드신규여부, 휴대폰번호 조회하여 외부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정보를전달하고 있다'는 등의 익명 제보자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피심인은 2024년 4월 18일경 해당 내용을 우리금융그룹(지주)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심인은 영업센터의 DW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전체 회수하고, 영업센터에서 조회한 DB 명령어 검증과 외부메일 발송 내역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외부메일 수신자가 피심인과 계약한 카드 모집인이 아님을 인지하여 2024년 4월 26일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및 가맹점주 대상 해당사실을 통지하였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2025년 1월 6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5년 1월 21일, 1월 22일, 1월 24일, 2월 12일 등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하였다.

# Ⅲ. 관련 법규 및 위법성 판단

#### 1. 관련 법규

가.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 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sup>(제1호)</sup>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sup>(제2호)</sup>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sup>(제3호)</sup>제1호 및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6(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확인·감독(가목)'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sup>16)</sup>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sup>17</sup>(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 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사실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sup>17)</sup>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

피심인은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주로부터 "개인/가맹점(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를 통해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동의를 받고 있으며,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를 통해 카드·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는 카드·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최소 74,692명의 가맹점주에 관한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하여 피심인의 신용카드 발급 마케팅에 활용하였고, 이 중 994명은 실제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먼저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발급 마케팅한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피심인은 관할지역의 가맹점·카드회원 영업·관리 등 피심인의 목적으로 피심인 내 조직인 지역별 영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 또한 영업센터가 카드발급 실적 증대 등 피심인의 업무 목적을 위해 가맹점주의 개인 정보를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다.

둘째, 당초 피심인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가맹점관리시스템, 카드발급심사시스템, DW 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부여, DW 시스템에서 조회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일 다운로드와 마스킹 해제를 승인하는 권한 등을 영업센터 등 부서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영업센터에 승인한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해당 접근권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것이다.

셋째, 피심인은 보호법 등에 따라 업무 분장에 따른 시스템 접근권한 신청, 개인 정보 마스킹 해제 신청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권한 부여 현황과 접속 기록 등을 점검·관리할 수 있음에도, 영업센터에서 발생한 과도한 접근권한 부여 현황이나 대량 조회·다운로드 행위를 점검·조치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운영 중인 인천영업센터에서 발생한 행위는 피심인의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심인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 활용 행위의 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적법 근거를 갖추어야 하는데,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가 카드·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 등을 하면서, 최소 74,692명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도 볼 수 없으며, 가맹점주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심인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발급 마케팅에 이용한 것으로 보호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하지 않은 사실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가 가맹점주 대상 신용카드 발급 마케팅을 하기 위해 가맹점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 하고 조회된 주민등록번호를 카드발급심사시스템에 입력하여 가맹점주가 피심인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조회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 번호 처리로서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 다.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해야 함에도, 영업센터 직원에게 DW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가맹점관리 업무와 신용카드 회원 관리 업무가 구분됨에도 일부 직원에게 가맹점관리시스템과 카드발급심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모두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가맹점관리시스템에서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출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 결과, 피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타사 카드 모집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타사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행위는 피심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아니라, 직원 일부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보호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 Ⅳ.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 1. 신용정보법 적용 사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본건 처분과 관련된 정보가 모두 개인신용정보이므로 일반법인 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 금융당국의 제재가 예고되어 있는바, 위원회의 제재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 제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검토 의견 : 불수용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법이 정하는 일정한 정보이고, 개인신용정보는 신용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한편, 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보호법이 적용된다.

본건 정보에 관해 살피건대, 이는 피심인의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신규 신용카드 발급 등 영업 실적 증대를 위한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이용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된 본건 정보에는 성명·전화번호 등과 함께 '가맹점주'의 카드 보유<sup>18</sup>)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피심인이 가맹점주 중기존 카드 회원이 아닌 자를 선별한 정보에 불과할 뿐, 개인의 지불능력 등 신용을

<sup>18)</sup> 카드를 보유한 경우, 마케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이며, 카드발급을 위한 신용조회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님

판단한 정보가 아니고, 실제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본건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신용정보법이 아닌 보호법 적용이 적용된다.

#### <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

- 기업·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성명·연락처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융거래정보 등과 결합하여 사업자 개인의 직업·소득수준·사회적 지위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용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로 볼 수 있음
- <u>카드발급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u>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21.4.6.)

한편, 본건 위반행위는 금융당국의 규제 범위인 '피심인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보유한 가맹점주의 정보를 침해한 행위'와 구분되므로 이중 제재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건 정보 이용에는 보호법 적용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2. 일부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본 사건이 영업센터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심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이며,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본 사건을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 나. 검토 의견 : 불수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점·카드회원 영업과 관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조직에서 카드발급 실적 증대 목적으로 위반행위가 실행되었으며,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는 DW 시스템에서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하는 등의 작업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공유·활용하는 등 일부 직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심인의 정보보호부서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업무를 영업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시스템 접속기록, 정보 조회기록 등에 대한점검·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정도의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안전조치를 기반으로 하는 내부통제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점에서 일부 직원의 일탈로 인한 사고라 볼 수 없다.

#### 3.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목적 외 이용의 수단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더라도, 본 건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목적 외 이용'을 위한 수단적 행위에 불과하며 별도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나. 검토의견 : 수용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가 가맹점주 대상 신용카드 발급 마케팅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입력 등 처리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가맹점주의 정보를 당초 동의받은 수집·이용 목적

범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단적 행위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하나의 행위'라는 피심인의 주장을 수용한다.

#### 4. 과징금 산정에 대하여

####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전체 매출액에서 본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법인카드, 체크카드, 캐피탈,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대환, 가맹점수수료 매출액, 일부 수수료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한정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검토의견 : 일부 수용

피심인의 주장 중 법인카드, 체크카드, 캐피탈, 카드론, 대환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거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가맹점수수료 매출액은 개인정보가 침해된 가맹점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이므로, 이 사건 개인정보가 침해된 정보주체가 가맹점주임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로 볼 수 없고, 개인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한 현금서비스의 수수료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보주체가 별도의 약정 없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는 다른 매출액과 다르지 않아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로 볼 수 없다.

또한, 기타카드수익 중 정보주체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 해외 매입사로부터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보전받는 매출 등도 정보 주체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정보주체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에 해당하므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로 볼 수 없다.

#### V. 처분 및 결정

####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은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한다.

-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면 밀히 검토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을 상시적·주 기적으로 점검하며, 업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화면에 출력·표시되지 않 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 2. 과징금 부과19)

피심인의 보호법 제18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제4호,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sup>20)</sup>(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sup>21)</sup>

다만, 피심인은 당초 동의받은 수집·이용 목적을 넘어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맹점주의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단적 행위로 주민등록번호를

<sup>19)</sup> 금융위원회에서 피심인의 카드회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에 대한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바, 보호법 제29조 위반 및 유출에 대해서는 이번 처분에서 제외함

<sup>20)</sup>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

<sup>21)</sup> 카드회원 정보를 DW를 통해 무단 조회·유출한 행위 관련 금융위원회 처분 예정인 점 고려

이용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sup>22)</sup>

####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 나. 기준금액

###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 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 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또는 임원의 책임·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sup>22)</sup> 주민등록번호 관련 위반행위의 피해규모 및 위반기간을 고려할 때, 목적외 이용 위반행위로 산정한 금액이 더 크므로 이를 기준으로 함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 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고의·과실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영리 목적의 마케팅 등에 활용한 점, 권한이 없는 제3자인 타사 카드 모집인에게도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과실은 '상'으로 판단한다.

위반행위의 방법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고, 업무와 무관하게 접근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점, 조회 및 대량 다운로드 급증에도 관련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화면 표출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은 있으나, 해당 위반행위가 일부 영업센터에서만 확인된 점,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일부 조치 등을 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크지는 않으나 상당하므로 '중'으로 판단한다.

위반행위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관련하여 침해된 개인정보에 주민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상'으로 판단한다.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마케팅을 위해 최소 207,538명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조회 및 파일로생성하였고, 이 중 마케팅 미동의자가 74,692명인 점, 원치 않는 마케팅을 다량수신하게 된 점, 다만, 카드발급은 정보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 및 영향이 상당하여 '중'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 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피심인의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전원23)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233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평 균
①전체 매출액				
②관련 없는 매출액				
①에서 ②를 제외한 매출액				

####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sup>23)</sup>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 약 1년 9개월로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한다.

#### 라. 2차 조정

과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인증번호 ISMS-P-FSI-2023-015, 인증 범위 카드서비스 운영, 유효기간 2023. 12. 20. ~2026. 12. 19.)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1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 내역>

①기준금액	②1차 조정	③2차 조정	④최종과징금
<ul> <li>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 천 원)</li> <li>연평균 매출액에 2.33% 적용 (매우 중대한 위반)</li> </ul>	• 위반기간 1~2년(25% 가중) ( 천 원)	• ISMS-P 인증(50% 감경) ( 천 원)	천 원24)*
⇒ 천원	⇒ 천 원	⇒ 천 원	

<sup>24)</sup>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 3. 공표명령

피심인은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 명령 지침」25)(이하 '공표기준') 제6조제1항제3호(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공표기준 제8조·제11조에 따라 당해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에 전체 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 4. 고발 및 징계 유예

피심인과 피심인의 직원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보호법 제59조,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므로 고발 및 징계권고 대상이다.

반면, 위원회는 피심인의 법 준수 기대가능성, 추가피해의 방지, 위반행위의 결과제거를 위한 노력, 향후 동종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및 징계권고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피심인은 내부자 신고 외부 채널인 '레드휘슬'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내부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근권한 제거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내부통제를 개선하였으며, 과거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이력도 없다.

또한, 위반행위에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대기 발령 등 자체적으로 조치를 진행한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과 직원 등에 대한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하지 않고 향후 이행 조치 결과 등을 제출받아 면밀히 점검하고자 한다.

<sup>25)</sup>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 Ⅵ.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항,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59조(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1호, 제4호, 제64조(시정조치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2항에 따라 과징금, 시정조치 명령, 결과의 공표명령, 고발 및 징계권고 유예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2025년 3월 26일

위원장 고학수 (서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김일환 (서명)

위 원 김진욱 (서명)

위 원 김진환 (서명)

위 원 김휘강 (서명)

위 원 박상희 (서명)

위 원 윤영미 (서명)